

정보통신정책

Information & Communications Policy

1997년 3월 3일

제 9 권 4 호 통 권 181 호

차 례

제호 변경에 부쳐

초 점

WTO 기본통신협상 경과와 협상타결 의의..... 1

동 향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과 우리의 대응 23

단 신

미 상무위원회, 인터넷 접속료 부과 반대 47

우정성 기술심의회, CDMA방식 추천 50

자 료

WTO GBT의 Reference Paper 54

색 인

과월호 색인(1995. 1. 16~1997. 2. 17)..... 59

안 내

1997 KISDI 자료회원제

WTO 기본통신협상 경과와 협상타결 의의

책임연구원 이 한 영*

본고는 94년 5월 WTO 기본통신협상의 출범으로부터 금년 2월 15일 협상타결까지 통시적으로 협상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동시에 협상의 주요 논의사항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본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세계통신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 | | |
|---|--|
| <p>I. 서 언</p> <p>II. WTO 기본통신협상의 출범</p> <p>1. 기본통신협상의 추진배경</p> <p>2. 기본통신협상의 출범과정</p> <p>III. WTO 기본통신협상의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p> <p>1.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기간</p> | <p>2. 기본통신그룹(GBT) 기간</p> <p>가. Critical Mass</p> <p>나. 국제서비스</p> <p>다. 위성서비스</p> <p>라.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 삭제</p> <p>IV. 결어 :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의 의의 및 과제</p> |
|---|--|

I. 서 언

94년 5월부터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목표로 시작된 WTO 기본통신협상이 2년 10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97년 2월 1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국가의 숫자만 해도 총 69개국에 이르고 시장가치면에서는 총 6,000억불에 상당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

* 연락처: (02)570-4320, lee10@sunnet.kisdi.re.kr

이 창출된 셈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주도하에 운영되어 온 통신시장에서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통신수요의 다양화, 국경과 영역을 초월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등 정보통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본협상의 타결로 향후 전세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활동이 정보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지식 및 정보산업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보자원에의 접근 및 이용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번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은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의 양적, 질적 이용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협상의 타결은 UR 결과 출범된 WTO 체제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UR은 협상참여국의 숫자 및 협상의 범위면에서 20세기의 가장 방대한 규모의 무역협상으로 안정된 다자간 무역규범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다시말해 WTO 체제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기존 GATT 체제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의 설치를 통해 과거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온 통상마찰 해결의 창구를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 당시 자유화 수준과 MFN원칙 적용문제가 밀접히 연계되어 주요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금융, 기본통신, 해운 등 서비스무역의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후속협상을 계속한다는 원칙만을 합의한 채 협상은 일단락되었다. 불행하게도 미국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과 해운 분야에서의 후속협상 결렬은 WTO 체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통신협상은 차기 후속라운드 개시 이전에 WTO 체제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금번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통해 WTO 체제가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쌍무협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WTO 기본통신협상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쌍무협상 과정에서는 상대

적으로 약소국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협정내용 및 이행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강대국의 편파적인 논리에 끌려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통신시장을 겨냥 미국은 쌍무협상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조달과정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EU 또한 미국과 동등한 사업참여 기회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WTO 체제하의 다자간협상이야말로 특수한 안보현실로 인해 정치적인 논리가 직·간접적으로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쉬운 우리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자간협상에서는 현안에 따라 협상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따로 없다. 협상 상대방이 고정되어 있는 쌍무협상과 달리 현안 여하에 따라 우리의 동지가 규합될 수 있기에 다자간협상에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WTO 기본통신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 강대국의 일방적인 시장개방 논리에 시달려 기본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의지와 관계없이 치루었을 지도 모를 더 큰 대가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출범으로부터 타결 순간까지 협상의 진행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협상의 주요 논의사항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본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세계통신시장의 전개 과정에서 본협상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WTO 기본통신협상의 출범

1. 기본통신협상의 추진배경

기본통신협상은 서비스무역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본통신이라는 영역에 대한 다

자간협상이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규율이 마련되는 계기는 GATT라는 세계무역규범의 내재적인 한계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다시말해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GATT체제가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본래적 문제점으로 인해 이러한 분야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보호무역의 관행이 시정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 각국은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다자간 무역규범이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우루구아이 라운드를 통하여 95년 1월 1일자로 WTO라는 새로운 범세계적 무역기구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최초의 기본통신협상은 93년 12월 15일 UR이 타결되고, 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UR 협상결과를 담고 있는 WTO 협정에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서명한 지 한달 후인 94년 5월에 개최되었다. 기본통신협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UR 협상이 진행중이던 1990년 10월 UR 이전에 자체 결정에 따라 기본통신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미국이 여타 협상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의 일환으로 자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진입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완화시키고 기본통신분야 자유화를 다자간 규범아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협상국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경제 전반에서 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전략적인 중요성이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급격히 변화해 가는 세계통신시장에서의 질서를 다자간 국제규범 하에서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주요 협상국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정보 및 통신분야를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손실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축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적인 무역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통신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은 별개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하부구조로서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된다.

기본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은 부가통신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UR에서 양허된 부가통신서비스는 대개는 경쟁체제 하에 운영될 수 있었지만, 부가통신서비스 시장발전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통신시장의 독점성으로 인해 발전 속도에 한계가 노출되었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선임대가격이 실제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UR 협정은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를 통하여 부가통신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서비스공급에 필요한 회선을 포함한 통신 하부구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부속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하부구조 이용에 대한 가격설정 규율 및 기본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적사업자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추가적인 서비스부문 후속협상의 하나로서 추진된 WTO 기본통신협상은 통신분야에서의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시현하기 위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최혜국대우 의무면제 선언으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의 위협 속에서 다자간협상이 쌍무협상보다 유리하다는 여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 통상문제에 있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과 함께 전세계 통신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¹⁾

2. 기본통신협상의 출범과정

기본통신의 시장자유화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90년 12월 미국이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의무면제 주장으로부터

1)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본통신과 부가통신을 합쳐 전세계 통신시장의 대략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15개 최대사업자 가운데 11개 사업자는 미국의 AT&T, MCI, Sprint 등 3개의 장거리사업자, GTE, 7개의 Bell 전화회사 등이 차지하고 있다.

비롯되었다. 92년 2월 미국은 자국 입장을 좀더 구체화하여 한국, 일본, EU 등 통신 선진국 12개국을 지정하여 장거리, 국제전화 등 기본통신분야에 대한 개방협상 논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 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거리, 국제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장거리, 국제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수 제한철폐
- 설비보유 또는 재판매 방식에 의한 외국인의 서비스공급 허용
-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원가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 보장
- 독립 규제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절차 확립

그러나 다수국들은 이러한 미국 입장에 맞서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최혜국대우 일탈 문제의 해결이 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92년 5월 스웨덴의 절충안이 나오기까지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구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스웨덴 절충안의 요지는 협상참여국 및 협상대상서비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자는 것으로서, 미국이 거명한 12개국 이외에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에 관심있는 모든 국가로, 장거리 및 국제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스웨덴의 절충안 제안은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다수국들로 하여금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간협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92년 12월 중도적 입장에서 UR을 종료하는 각료회의 이후 1개월 이내에 모든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되 2~3년 이내에 종료하자는 기본통신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Protocol을 배포하였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제안을 계기로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간협상 반대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93년 7월 캐나다는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의 논의대상을 정리한 공통의제(Common Agenda)²⁾를 제출하였다. 93년 9월에는 캐나다가 제안한

2) 공통의제의 내용은 크게 기본통신의 정의 및 범위, 양허표 기재방식, 시장진입제한 유무 및 내용, 시장진입 이후의 공정경쟁보장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공통의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거쳐 93년 12월 UR 종료시점에서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간협상을 94년 4~5월경 최초로 개최하고 96년 4월 30일까지 종료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총 17개국이 협상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최종적으로 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WTO 협정이 서명과 함께 각료결정에 따라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이 설치되고 동년 5월 최초의 기본통신 협상이 개최되었다. 93년 12월 UR 타결과 동시에 합의된 기본통신에 관한 결정(Decision on Negotiations on Basic Telecommunications) 및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Annex on Negotiations on Basic Telecommunications)에 정리되어 있는 협상의 목적, 범위, 방식, 참가국, 기간, 평화조항 등은 다음과 같다.

- 협상목적 : 기본통신교역의 점진적 자유화
- 협상범위 : 기본통신 전분야(전송망과 서비스 포함)
- 협상방법 : NGBT를 설치하여 협상추진
- 참가국 :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개방
- 협상기간 : 1996년 4월 30일까지 협상종료
- 평화조항 : 협상기간중 자국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금지
(단, 기본통신 관련 상업적 협정이나 정부간 협정 체결은 가능)

Ⅲ. WTO 기본통신협상의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

1.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기간

NGBT 협상기간 초반에는 효과적인 협상진행과 협상대상 파악을 위해 각국 기본통신시장의 구조 및 규제제도 현황 확인을 위한 질문서를 작성·배포하고, 94년 하반기부터는 동질문서에 대한 협상참가국들의 답변서가 제출·검토되기 시작하였

다. NGBT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어느정도 각국 기본통신시장의 현황이 파악된 95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협상참여국들은 각국 기본통신시장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양자협의를 통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상대국에 시장개방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95년 7월부터는 상대국 요구사항에 의거 양허안(시장개방계획서)이 제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및 허용시기, 사업자수 제한여부, 서비스공급 방식 관련 유·무선 통신망 구축 또는 기존 통신망 임차 허용여부 등 핵심적인 쟁점들이 서서히 협상테이블의 표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협상의 양대축을 형성하는 EU의 양허안 제출지연으로 대다수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안 제출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당시 해결과제는 세부 양허내용에 대한 협상이라기 보다는 주로 양허안의 조기제출에 맞추어져 있었다. 95년 10월 EU의 양허안 제출 이후 협상은 가속화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동년 12월 최초양허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가장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95년 11월 NGBT 협상결과로서 도출될 각국의 시장진입 약속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pro-competitive regulatory framework)'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 규제제도의 투명성, 공정경쟁보장장치, 독립성을 가진 규제기관의 존재 등 네가지가 약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효한 시장진입기회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수차례의 비공식회의를 거쳐 96년 4월 시장개방이후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규제원칙을 담은 Reference Paper³⁾를 탄생시켰다. 사실 협상 초반부터 허가, 기술표준, 상호접속 등 일련의 규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한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EU와 한국은

3) Reference Paper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협상참여국이 자국 양허표상의 추가양허(Additional Commitments)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기재된 규제원칙에 대해서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말해 시장개방 이후 국내시장에 진입한 외국사업자와 기존 국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게임의 법칙(Rule of the Game)인 셈이다.

기존의 GATS 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새로이 약속을 해야하는 부분과의 구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Reference Paper에 담게될 규제원칙이 각국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내용을 실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국의 규제제도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도 신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주로 상호접속 의무부와 대상사업자의 범위, 허가절차, 국제통화정산료 공개 등이 문제되었으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모색되었고, 다만 국제정산료를 공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다수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96년 2월 미국은 통신, CATV, 방송의 전 분야에 걸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통신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은 기존 간접투자 25% 상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무선국허가를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하며, 모든 시내 및 장거리 기본통신서비스를 개방하는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수정양허안 제출과 함께 EU로 하여금 개방시기를 98년 이후로 정한 국가와 외자제한을 가한 분야에 대해 양허수준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일본에게도 통신망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1/3 외자제한을 완화하도록 재촉하였다.

96년 4월 들어 개도국들로부터의 양허안 제출이 증가하고, 양허안 기제출국으로부터 기존 양허안의 수정제출이 계속되어 4월 30일 협상시한까지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다. 우리나라도 설비보유에 기초한 부문에 대한 유·무선 33% 외국인 지분허용과 2001년 공전공접속에 의한 음성채판매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5년 12월 제출된 최초양허안을 주요내용 변화없이 부분수정하여 96년 4월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였다.⁴⁾

그러나 협상종료 최종시점에서 미국은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협상연기

4) 당시 양허개선 내용에는 서비스의 국경간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에 대한 제한적 허용, 허가요건으로서의 강제적 기술표준(Mandatory Technical Standard) 삭제, 위성서비스의 양허 등 3가지가 포함된다.

를 선언하였다. 연기사유로는 전반적인 양허내용에 있어 기대수준(Critical Mass)⁵⁾ 미달의 국제서비스와 위성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양허 및 논의 부족을 들었다. 협상초반부터 계속해서 쟁점화 되어온 국제서비스에 대해서 미국은 국제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고자 다소 급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미국은 국제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관계없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제서비스에 대한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기폭제로서 원가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존 국제정산료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Paper 논의과정에서 미국이 국제정산료의 공개를 시도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충분하다. 반면 여타국들은 문제의 원인이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제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임하되, 당분간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교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제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양허수준의 차이를 동등하게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의 본래적 의도는 ‘국제정산료의 현실화’ 쪽에 이미 맞추어져 있었으나 국제정산료의 공개라는 초동단계에서 협상참여국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협상기한의 연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정은 96년 하반기 FCC의 국제정산료에 대한 Benchmark 제안으로 확인된다.

위성서비스 문제는 다분히 돌발변수이며 미국내 위성사업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5) 미국은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Critical Mas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며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협상과정을 지켜본 필자의 소견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협상타결에 필요한 만족스러운 양허안 제출국의 숫자와 양허수준’을 총칭하는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미국만이 실용적인 차원의 정의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미국 기본협상전략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니 만큼 미국 내부적으로도 Critical Mass에 대한 정의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로비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NGBT 협상기간중 우리나라는 최초양허안의 양허대상서비스에서 위성서비스를 제외하였으며, 미국과의 양자협약 과정에서 위성서비스에 대한 정의, 분류, 규제제도, 양허방식 등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허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여타 협상참여국들로부터도 동문제 관련 이렇다할 정보가 입수된 바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최종일에 이르러서 미국이 협상연기 사유로서 위성서비스를 들고 나온 것은 단순히 위성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조만간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세계 개인휴대통신서비스(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를 포함한 위성서비스 부문 시장선점을 위한 경합과정에서 각국 기간통신사업자가 주로 지분참여하고 있는 저궤도위성사업자인 ICO에 불안감을 느낀 Iridium, Odyssey, Global Star 등 미국 저궤도위성사업자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자신들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내부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96년 4월 30일 개최된 제17차 NGBT에서 협상타결은 실패하였고, 협상시한은 97년 2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94년 이래 기본통신협상을 추진하여 온 서비스 무역이사회 산하 기본통신협상그룹(NGBT)도 기본통신그룹(GBT: A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으로 새로이 탈바꿈하여 추후 협상추진에 임하기로 하였다. 다만, 협상결과의 발효일은 98년 1월 1일로 그대로 두고, 협상결과의 국내 비준절차는 97년 11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기본통신그룹(GBT) 기간

96년 7월부터 협상타결 시점인 금년 2월 1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GBT가 개최되었으며 이 가운데 제6차~9차 GBT는 협상 최종단계에 속한다. NGBT 기간중의 협상타결 실패원인이 국제서비스와 위성서비스 문제로 지적된 만큼 주로 동문제 해

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물론 전기간에 걸쳐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 개선 및 Critical Mass의 달성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일부 기술적인 현안들 가운데에는 GBT 기간중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ITU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ITU의 권고사항들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협상결과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 아래에서는 GBT 기간중 내내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현안들을 크게 Critical Mass, 국제서비스, 위성서비스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97년초부터 제기되어 다자간 합의된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 삭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가. Critical Mass

협상타결의 최종순간까지 협상타결 전망을 예측할 수 없게 했던 대표적인 요인은 미국이 주장한 Critical Mass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Critical Mass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실리를 얻었는지, 또한 여타국들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적어도 협상에서의 Focal Point를 제시하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협상을 주도할 수 있었다. 미국의 Critical Mass에는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4개국(Quad)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인도, 남아공 뿐만 아니라 ASEAN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성장 전망이 밝은 모든 개도국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당초 미국은 GBT 기간 초기 양허안 제출이 미흡하자 주로 ASEAN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아공 등의 양허안 제출이 Critical Mass 달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양허개선 방향이 확인된 96년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는 '외국인이 통신망을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양허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가시화하였다. 한편으로 이때부터 여타 협상참여국들이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외국인이 자국 통신망의 운용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축소할 것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시나리오가 등장하였다. GBT 협상의 최종단계에서는 주로 추가적인 양허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겨냥함으로써 상기 시나리오에 따른 협상의 부분타결 예측을 팽배하게 하였다.

물론 멕시코는 최종순간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49%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기대에 부응한 감이 없지 않으나, 캐나다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기존 양허수준을 고수하기 위한 도구로서 협상의 부분타결 시나리오를 이용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GBT 협상 최종단계에서 Critical Mass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미국의 의도한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Critical Mass에 대한 유동적인 입장은 때로 여타 협상참여국들에게 미국이 과도하게 실리적인 인상을 줌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는 불필요한 추측에 근거한 오보 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기간중 미국은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통신망을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양허수준'을 주장함으로써 국내언론이 설비보유에 기초한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가 50%를 넘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추측기사까지 보도하였던 적이 있다.

협상타결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USTR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를 허용한 국가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97%(56개국)를, Reference Paper의 규제원칙을 추가양허한 국가는 94%(65개국)를, 국제서비스를 허용한 국가는 99%(53개국)를, 위성서비스를 허용한 국가는 80% (42개국)를 각각 차지한다. 사후적으로 미국이 Critical Mass에 대한 정의를 밝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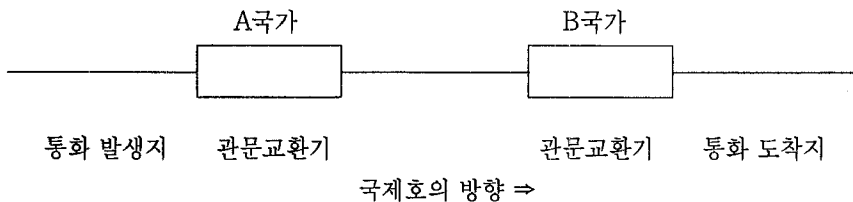
나. 국제서비스

적어도 기본통신협상 과정에서 국제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미 NGBT 기간중 호주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호주는 국제접속서비스(Termination Ser-

vices)⁶⁾라는 개념을 통해 현행 국제정산체계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또한 양허안에도 국제접속서비스라는 별도의 서비스 항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국제접속서비스는 발신지와 관계없이 속성이 동일하나 국가별로 국제접속서비스 요금(예 : 국제정산료)은 상이하고 대부분 비용이 아닌 시장지배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현 국제접속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소유·운영하는 독점사업자가 많고 경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수가 적거나, 가격경쟁 및 특정사업자에 대한 통화량을 제한하는 국내 법 및 규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호주는 비공식문서를 통하여 현행 국제정산체제하에 이루어지는 국제접속서비스를 양허대상에 포함시켜 GATS의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국제접속요금(termination rates)을 공표함으로써 현행 국제정산료에 내재한 거품을 줄이자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호주의 의견은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Reference Pape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국제정산료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힘을 얻는 듯 하였으나, 협상참여국들의 거센 반대에 의해 국제정산료 공개 시도가 좌절되면서 96년 4월말 호주의 수정양허안에서는 국제접속서비스 항목 자체를 제외시키기에 이르렀다. 다만 호주는 양허안 서문을 통하여 국제정산료 및 국제접속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는 미래에 새로이 추진될 협상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6) 호주에 의하면 국제접속서비스는 통신망사업자 상호간에 상호접속을 통하여 자신의 통신망에 상대방의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국제전화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서 거래되는 요소로만 존재하는 사업자간 교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크게 통화발신 통신망에서 착신 통신망으로의 통화의 전송, 통화가 전달되는 착신 통신망 상의 관문교환기 또는 진입점, 착신 통신망 내에서 관문교환기로부터 통화의 최종목적지로의 연결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미국은 기본통신협상 초기부터 국제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의가 자국의 의도대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제서비스 분야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분야에 대한 외국사업자의 미국시장진입에 대해 MFN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의도를 밝혀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협상참가국들은 국제서비스를 양허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협상참여국들이 자국의 국제서비스시장 개방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국제서비스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발생가능한 반경쟁행위⁷⁾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정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물론 이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은 외국 신청사업자의 국내시장(home market)의 개방상태를 국제서비스제공 허가 발급의 주요기준의 하나로 삼는 미국의 유효경쟁심사(ECO Test : Effective Competitive Opportunity Test) 제도는 WTO서비스협정의 기본의무인 MFN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국제서비스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은 96년 9월 EU의 제안을 계기로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EU는 소위 자율규제장치(Auto-discipline)을 통해 국제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은 국가가 상대국 시장에서 자국 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고 실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분히 미국의 사전적인 면허심사를 염두에 둔 발상이나 단순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도 문제의 책임을 일방이 지게 되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국제서비스에 대한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 개선 및 기존 국제정산체계의 개혁이라고 보는 미국은 96년 10월까지 국제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보장장치 마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서

7) 미국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국제서비스 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 (i) 재판매에 의한 경우 : 시장 자유화가 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시장이 자유화된 국가로의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국제호를 낮은 서비스요금으로 공급
- (ii) 설비보유에 의한 경우 : 시장 자유화가 되지 않은 국가의 독점사업자가 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상호보조를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제서비스요금을 낮게 설정

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면허심사 방침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6년 11월에 이르러서 미국은 자국의 국제정산료 적자현황을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FCC가 국제정산료 관련 Benchmark 제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제안이 국내 규제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며 MFN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서비스 허가기준으로 국제정산료의 Benchmark가 이용될 것이라는 기본취지를 밝혔다. 국제정산료의 Benchmark 관련 FCC의 제안서(NPRM)가 배포된 직후 개최된 97년 1월 협상에서 미국은 동제안의 배경, 주요내용, 시행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동제안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협상상대국들의 입장만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이후 협상타결 시점까지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타 협상참여국들은 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가급적 회피하였다. 그 배경은 두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정산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개진은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협상결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제정산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ITU에서 논의되어 온 만큼 WTO보다는 ITU를 주된 논의의 장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Benchmark 제안의 최종안이 GBT 협상타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제안의 시행과정에서 MFN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터키는 국제정산료에 대해 MFN 의무면제 신청으로 국별로 차별적인 국제정산료 적용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 위성서비스

GBT 협상초기 위성서비스 관련 논의는 미국의 질문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위성서비스에 대한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 개선과는 별도로 위성서비스의 정의, 범위, 규제제도 등이 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각국의 양허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질문서 배포의 기본취지였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규제제도를 근거로 작성된 질문서에 대해 상이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타 협상참여국이 답변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고 당연히 답변서의 제출실적은 저조하였다. 물론 질문서 배포를 통한 미국의 노력은 협상참여국들이 위성서비스 관련 개념과 현안을 이해하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주요현안이라 할 수 있는 위성서비스에 대한 양허표상의 기재방식, 정부간 위성기구(ISO :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zation)의 GATS상의 법적지위, 범세계 개인휴대통신서비스(GMPCS)를 위한 국별 주파수배정의 조화, 위성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구분방식 등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의 협상참여국들은 특히 위성서비스 양허 관련 미국 질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시말해 위성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수단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전송수단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위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송수단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미국의 질문서를 중심으로 한 위성서비스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국 위성서비스의 양허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없이 기술중립적인 양허방식을 택하는 경우 위성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양허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GBT 협상최종일에 의장노트(S/GT/W/2/Rev.1)를 채택하였다.

위성서비스 관련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GBT 협상과정을 통하여 뚜렷한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은 Intelsat 및 Inmarsat 등 정부간 위성기구(ISO)가 GATS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들 기구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할 의사와 함께, 이들 기구에 대한 민영화로의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는 한 Comsat이 갖고 있는 이들 기구와의 위성링크에 대한 독점권을 완화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민영화로의 구조조정의 결과 탄생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양사간의 반경쟁행위를 위한 여하한 형태의 담합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는 한 자회사에 대한 위성서비스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현재 진행중인 Intelsat의 구조조정에 대한 미국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Intelsat의 구조조정 관련 유럽과 아프리카는 위성서비스 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분업관계를 통하여 양사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참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양사간에도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투자자란 대부분 자금력이 막강한 미국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은 Intelsat의 자회사를 자국 수중에 넣고 위성궤도자원을 독점함으로써 국제위성체제를 실질적으로 자국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위성방송서비스 논의와 관련하여서 협상 최종순간에 미국은 DTH, DBS,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한 MFN 의무면제를 신청하였다. 여타 국가들 가운데에는 간접적으로 자국 방송법에 의거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방송서비스를 제외한다는 입장을 양허표상에 기재하였고, 브라질은 미국과 유사하게 동서비스들에 대한 MFN 의무면제를 신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나라는 양허대상서비스 분류번호(CPC Cod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ode)의 기재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방송서비스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MFN 의무면제 신청은 향후 미국이 동서비스에 대한 자국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점과 함께 동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국별 쌍무협상 추진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 주과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 삭제

협상참여국들은 대부분 양허표상의 시장진입란에 '가용주과수 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을 기재하여 왔다. 97년 1월초 제5차 GBT 협상시 미국은 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동제한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장된 무역장벽(Disguised Barriers of

Trade)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제한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물론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으로 사업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각국의 주파수관리정책이 GATS 원칙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한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이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이해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제5차 GBT 협상 이후 제시된 미국안은 동제한의 기본취지는 담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파수제약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 가능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EU는 주파수 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 가능성과 함께 현재 및 미래의 주파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배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두가지 안을 놓고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자 의장은 주로 EU안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견이 고려된 중도안으로서 의장노트를 마련하고 협상 최종일에 다자간 합의하에 이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의장노트의 주요내용은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을 양허표상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주파수의 희소성에 기인한 사업자수 제한 및 각국 고유의 주파수 배분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의장노트의 내용에 따라, FPLMTS 사업자를 허가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배분할 경우 일정대역을 향후의 연구개발용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한과 주파수 대역을 어느 정도 분할하여 몇 개의 사업자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각국의 규제기관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IV. 결어 :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의 의의 및 과제

97년 2월 15일 근 3년간 지속된 WTO 기본통신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타결은 전세계 기본통신시장 자체에 기여하는 의미도 크지만, WTO 체제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UR의 후속 협상으로 시작된 금융 및 해운분야에서의 실패와 함께, 96년 4월 기본통신협상의 연

기가 결정될 당시만해도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자유화협상에 비해 분야별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적은 분야별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염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성공적인 협상타결로 WTO 체제하의 분야별 자유화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협상타결의 결과로 총 69개 회원국이 시장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90%이상이 전면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내부적인 변화요인이 적겠지만, 국영 독점사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개도국들에게는 대대적인 국내시장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등 대외경쟁을 위한 체질개선이 가장 당면한 과제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협상타결은 한편으로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예고한다. ITU는 이미 기본통신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6,000억 달러 가치의 기본통신시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두배 혹은 세배로 더 성장할 것이며, 통신장비 부문을 포함한 통신산업의 총수익이 200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이상에 달해 현재의 두 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2/3는 단 한번의 전화통화 경험도 없으며, 전세계 56억 인구 가운데 단지 6억만이 전화선을 갖고 있다니, 향후 개도국의 시장잠재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협상타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보산업과 통신기반구조에의 투자증대로 인한 국가 기간망의 근대화 및 고도화와 보다 자유화된 시장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시현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비용하락을 통해 다른 산업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며, 국가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촉진

할 것이다.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으로 이용자들은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국제통화요금은 이번 협상타결의 결과로 80% 이상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협상타결은 전세계 기본통신시장 내부에서의 인수 및 합병의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시장의 판도변화와 함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올해 말부터 국가가 독점해 온 자체의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Global Network 경쟁을 위한 전략적 제휴도 가속화되고 있다. BT와 MCI는 Concert를, Sprint Corp., Deutsche Telekom, France Telecom은 Global One을, AT&T, Unisource, KDD, ST는 WorldPartners를 각각 합작사로 구성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간 '선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하에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경쟁 체제구축을 도모하여 왔다. 이제 WTO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단계적인 국제경쟁 확대에 신속히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외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국내시장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관련 선진국 시장의 경우 전면적인 외자진출을 허용하나 국내사업자에 비해 기술수준이 우세하므로 기존 사업자에의 지분참여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그리고 개도국 시장의 경우는 외자진출 허용 한도에 따라 기존 독과점사업자에의 지분참여와 직접투자를 적절히 배합하여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우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정보통신부, 『WTO 기본통신협상 자료집』, 각권.

최병일, 이한영, 『기본통신협상의 현황과 대응』, 통신개발연구원, 연구보고 95-10,
1995. 12.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10.

Ben Petrazzini, "Global Telecom Talks : A Trillion Dollar De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1996.